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1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이달희

송석준 · 최수진 · 김소희

서명옥 · 서천호 · 강대식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8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고, 장애인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합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 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 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 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 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장애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조).
- 다.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장애인학대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범죄자와 장애인학 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장애인학대범죄를

가중처벌 함(안 제9조).

- 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상 일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 록 함(안 제19조).
- 아.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차.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 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카.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 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

- 타. 법원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함(안 제30조 및 제36조).
- 파. 임시조치 불이행,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 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을 말한다.
-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 제253 조 및 제254조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제1항·제2항, 제261조 및 262조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7장 낙태의 죄 중 제270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1항·제 2항, 제273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0조 및 제281조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제2항, 제 284조 및 제286조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 조, 제288조, 제289조 및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 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 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 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의 죄
- 파.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의 죄

- 하.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의 죄
- 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 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너.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87조제1호의 죄
- 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의 죄
- 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
- 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버.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죄
- 서.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
- 4. "장애인학대범죄신고등"이란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5.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장애인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 6. "장애인학대행위자"란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7.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학대범죄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범죄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 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등)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조(장애인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장

- 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7조(장애인학대중상해)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장애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 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3호가목부터 버목까지의 장애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 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장애인학 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법정대리인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3.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사업주도 포함한다)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람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및 그 밖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보육교직원
- 6.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7.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활동지원인력 제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형사소송법」 적용의 특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

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애인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장애인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 2.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 제1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 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사람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 당소의 장과 그 종사자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8.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0.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1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

시하는 사람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19.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 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장애인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범죄신고 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 제17조(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장애 인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장애 인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장애인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장애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장애인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장애인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애인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③ 피해장애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와 동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배관계 아래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④ 제2조제3호아목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장애인학대범죄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장애인을 조사하게 하여야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장애인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장애인학대범 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유

- 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인권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필수적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피해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진술조력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조력인의 조력 필요성에 관하 여 평가한 의견과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및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을 검사, 변호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 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 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 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 제22조(보조인) ① 피해장애인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과 그 기관장, 그 밖에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 에 있는 사람 및 제21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장애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 2. 피해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법원과 상대방, 변호인,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행위

- 3. 장애로 인한 거동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조하거나 법원에 적절한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행위
- 4.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상의 행위
-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임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자와 피해장애인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판사는 보조인이 피해장애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 및 의사결정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장애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⑧ 수사기관이 피해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으로, "소송"은 "수사"로 본다.
- 제23조(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장애인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장애인"으로 본다.

-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장애인학대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의 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공, 인 력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현장출동) 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사법경찰관리나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장애인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 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장애인,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

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해 장애인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피해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장애인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으로부터 격리(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장애인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장애인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 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장애인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이나 의료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26 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 또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8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 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부터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0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5항에 따라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 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장애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부터 퇴거 등 격 리
 - 2. 피해장애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장애인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장애인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장 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원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피해장애인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지,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 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장애인학대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 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4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발달과정, 성장배경, 의사소통 방식, 장애 특성 등 피해장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조사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30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장애인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수 있다.
 - ②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임시조치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명령) 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 피해장애인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 피해장애인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
- 7. 피해장애인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8. 친권자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9. 후견인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10.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1항 각 호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담소 등과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을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7조(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

령을 하는 경우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집 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 시를 할 수 있다.
- ③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고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 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제38조(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9호까지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법원의 판사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

-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 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9조(피해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3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장애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40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 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41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3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제38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37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39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장애인, 장애인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 고할 수 있다.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2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30조제1항 제4호의 임시조치,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피해장애인보호명

령 또는 제39조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 피해장애인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장애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등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장애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의 장 등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장 애인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 949조를 준용한다.
-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 재판 및 보호

- ·지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장애인학대범죄에 관련된 장애인학대행위자, 피해장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장애인 등 각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장애인, 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피해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의를 하도록 기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5조(임시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
- 2. 제3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 제39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장애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 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사법경찰관리, 법원공무원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7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그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4조제2항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3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장애인학대범 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 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5조를 위반하여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차별 또는 조치
-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장애인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